

제1950호 고양시보

2023년 2월 7일(화)

차 례

조 례

고양시 조례 제2633호	고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
고양시 조례 제2634호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	12
고양시 조례 제2635호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7
고양시 조례 제2636호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고양시 조례 제2637호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고양시 조례 제2638호	고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34
고양시 조례 제2639호	고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8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23-60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42
고양시 일산서구 고시 제2023-1호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및 폐기 고시	44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23-257호	고양 GB해제취락(49개소)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도시계획시설 : 공원 폐지) 공람 공고	46
-------------------	--	----

제27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2월 7일

고양시 조례 제2633호

고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고양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고양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 한다)의 분과위원회로 운영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내로 한다.
-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 ⑥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제4조(답례품의 종류)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 특산품과 시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시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0. 시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 공예품
1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 관광 입장권 등 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5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시에 생산·제조 기반이 있는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 유통 업체에 입점했거나 시 및 민간 업체 온라인 쇼핑몰 또는 TV 홈쇼핑에 입점 및 판매 이력이 있는지
7.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 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7조(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8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 등의 발급

제9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의 여유자금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규정한 비율의 금액 내에서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관 등)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이 정하는 사람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3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

나.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라. 지역의 특산물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지역의 농어업인 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바. 그 밖에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5. 제1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전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 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 운용 계획과 전년도의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시작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 안전, 발언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 안전 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전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1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양사랑 기부금 업무의 담당자 중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22조(의견 청취)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 기금 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 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5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이하 “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고양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 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 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결산보고서는 고양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6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공모
3. 제1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제24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촉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소관부서		평화미래정책관
입 안 자	과 성 장 명	평화미래정책관 양 승 환
	팀 성 장 명	특례시추진팀장 김 대 성
	담 당 자 성명·전화	양 윤 수 031-8075-2438

고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안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나. 답례품의 종류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방법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다.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라.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23조까지).

제27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2월 7일

고양시 조례 제2634호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고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고양시 소

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6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④ 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소 영양·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 2.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 3.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
- 4.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지도
- 5.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자문
- 6.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
- 7.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영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고양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식관리지원센터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원한 업무는 이 조례에 따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부서		식품안전과
입 안 자	과장 성명	식품안전과장 곽 은 경
	팀장 성명	식품안전정책팀장 차 미 량
	담당자 성명·전화	김 서 연 031-8075-3318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고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제명을 「고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함.
- 나. 조례의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다. 센터 설치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라. 센터의 조직 구성, 운영 및 업무범위,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마. 센터의 위탁근거를 규정함(제9조).

제27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2월 7일

고양시 조례 제2635호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존엄과 행복 보장 및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도시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호하거나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과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침해”란 제1호에서 규정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면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①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고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시의 인권정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인권업무 전담부서 설치) 시장은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전담부서(이하 “인권부서”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 기반 행정을 위한 조직 및 정책 추진 체계 구축
2. 전 직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
3. 시민에 대한 인권교육
4.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발굴

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4.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조달방안
5. 그 밖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인권상황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속적인 계획 이행을 위해 인권지표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행계획의 이행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고양시 인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인권정책회의)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인권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고양시 인권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회의는 시장이 주관하며 관계부서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과 고양시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할 수 있다.

③ 정책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정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정책회의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인권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제9조(시민인권참여단) ① 시장은 인권정책 발굴과 시행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인권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시가 주관하는 시민참여단 양성과정 또는 별도의 인권 교육을 이수하거나, 인권 분야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시민 중에서 시장

이 위촉한다.

③ 시민참여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추진하는 인권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2.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활동

④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과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이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1. 시의 산하 기관
2. 시의 사무위탁기관
3. 시의 재정 보조를 받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4. 시 소재 사업장 및 민간단체

④ 시장은 소속 부서와 시가 운영하는 기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시장은 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교안·교재를 개발하거나 콘텐츠를 제공하고 강사를 양성·지원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인권영향평가) ① 시장은 정책 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시 자치법규

2. 시 또는 시장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및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범위, 선정 기준, 평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고양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 심의

2.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및 결과 심의

3.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 심의·권고

4.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 정책과 관행에 대한 개선 권고·의견 표명

5. 인권센터의 자문에 대한 심의 및 검토 의견 제시

6. 그 밖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심의·검토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료 제출이나 관계 공무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이행 여부 및 사유를 권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인권업무 담당 실장·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3. 인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 분야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인권 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인권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사임하거나 해촉된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의 의사에 반해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심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이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해촉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

촉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분기별 1회의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사항이 시장에 대한 권고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인권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인권센터는 센터장과 직원을 두고, 업무 및 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③ 제2항에 따른 센터장과 직원은 인권 관련 전문지식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상담·조사 및 권리구제
2.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3. 인권 관련 프로그램 개발·교육·홍보
4.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5. 그 밖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 또는 위원회가 요청하거나 인권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⑤ 인권센터는 조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문서열람, 시료 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자료 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⑥ 인권센터는 운영사항을 분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하며 필요시 자문할 수 있다.
- ⑦ 인권센터는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한다.
- ⑧ 그 밖에 인권센터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교류 협력) ① 시장은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의 구현을 위해 국내외 중앙 및 지방정부와 국내외 인권기구·인권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 및 조직을 확충하고, 인권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권증진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

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고양시 인권증진위원회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양시 인권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고양시 인권증진위원회의 위원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양시 인권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안자: 송규근·김미수·박현우 의원(찬성의원: 최성원 의원 등 18명)

□ 제안이유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인권센터 설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제명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나. 인권업무 전담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다. 시민인권참여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 라. 고양시 인권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등의 사항을 규정함(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 마. 인권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7조).

제27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2월 7일

고양시 조례 제2636호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할 때 청년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양시(이하 “시”라고 한다) 청년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제1항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은”을 “기본계획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청년정책위원회”를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고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 2명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 제1부시장과”를 “공동위원장은 제1부시장과”로,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고”를 “호선하고”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아니하여야”를 “않도록 해야”로 한다.

제12조제3항 전단 중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정책 분야별 분과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분과회의의”를 각각 “분과회의”로,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 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청년정책협의체) ① 시장은 각종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고양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의 기본계획 수립 참여
2. 청년 관련 아이디어 수렴 및 정책 제안
3. 시에서 시행 중인 청년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제안

4. 청년 문제 발굴 및 발전방안 제안

5.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협의체에서 발굴된 청년 문제의 해결과 정책 제안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협의체의 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를 “수립·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년고용확대”를 “청년고용 확대”로, “강구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를 “위하여 노력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준하여”를 “개선방안과”로, “마련하여야 한다”를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마련해야 한다”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청년의 날) ① 시장은 「청년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날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청년의 날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청년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정책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고양시청년정책위원회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고양시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고양시청년정책위원회”를 “고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한다.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박현우 · 권선영 · 안중돈 의원(찬성의원: 최규진 의원 등 7명)

□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고양시 청년정책협의체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 활동이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요내용**

- 가. 새로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청년의 자립 지원과 시정 참여 보장을 강조하여 시장의 책무를 변경함(제4조).
- 나. 상위법에 따라 고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함(제6조, 제9조 및 10조).
- 다. 고양시 청년정책협의체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13조).
- 라. 청년의 날 기념행사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함(제25조).

제27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2월 7일

고양시 조례 제2637호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매장· 화장 및 개장의 방법) 매장· 화장· 개장 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장사시설의 장례용관을 친환경 장례용관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손동숙 · 고부미 · 김운남 의원(찬성의원: 문재호 의원 등 7명)

□ 제안이유

- 기존의 화장방식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친환경적인 화장 문화를 확산시켜 장례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장례용관을 친환경적인 장례용관으로 대체하여 사용함으로써 화장 시 발생하는 각종 유해화학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유골을 깨끗하게 보존하여 고인에 대한 예의와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매장 · 화장 및 개장 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장사시설의 장례용관을 친환경 장례용관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제9조의2).

제27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2월 7일

고양시 조례 제2638호

고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고양시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
4. 취업·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
5. 기관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6.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 방법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2.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3. 가족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4. 교육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6. 관계 교육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위탁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고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안자:** 장예선 의원 (찬성의원: 송규근 의원 등 16명)

□ **제안이유**

- 고양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제5조).
- 나.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함(제6조).
- 다.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의 위탁 등을 규정함(제7조).
- 라.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제27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2월 7일

고양시 조례 제2639호

고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산업의 성장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
2. 밀원식물의 조성 및 관리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양봉 사육·관리 및 병해충 방제 사업
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방안
6.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과 양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 등 교육기관 및 관계 기관 등을 지정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양봉농가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고양시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
2. 주된 사업장이 고양시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따라 고양시 등록된 양봉농가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및 홍보사업
3. 꿀벌 신품종 및 토종벌 산업 육성·보급사업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사업
5. 밀원식물의 식재·증식 및 보호·관리사업

6.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농업인·소비자 등 교육·훈련 사업

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안자:** 원종범 · 김미수 · 안중돈 의원 (찬성의원: 손동숙 의원 등 13명)

□ **제안이유**

- 고양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 시행을 규정함(제4조).
- 나. 양봉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제5조).
- 다.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해 규정함(제7조).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 제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7일

고 양 시 장

1. 고 시 일 : 2023. 2. 7.(화)
2. 고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붙임(조서 및 도면)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031-8075-3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릉천로493번길'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도면

도로명	관할 구역	구분		도로구간		길이(m)	폭(m)	기초번호 간격(m)	기초번호	변경 사유	고시일	효력발생일
				기점	종점							
공릉천로493번길 (1차종속)	고봉동	도로구간 변경	변경 전	설문동 341-1	설문동 804	80	3	10	64-1(2) → 64-15(16)	도로구간 변경 및 연장	2023. 2. 7.	2023. 2. 7.
			변경 후	설문동 341-1	설문동 337-3	170	3	10	64-1(2) → 64-33(34)			

도로구간 변경 도면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9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수렴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및 폐기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및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7일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1. 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 설치 : 지적도근점 No.3550 등 40점
- 폐기 : 지적도근점 No.1418 1점

2.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 중부좌표계 원점(동경 127° 북위 38°)

3. 좌표·소재지 및 설치·폐기일 : [붙임]과 같음

4. 표지의 재질 : 철재

5. 측량성과 보관 장소 :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서고

6. 연락처 :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재조사팀(☎031-8075-7198)

지적기준점 설치 및 폐기 목록

(고양시 일산서구)

순번	지적기준점		세 계 좌 표_GRS80		지 역 좌 표_Bessel		설치 및 폐기일	표지재질	토지소재지	보관 장소	비고
	명칭	번호	X (m)	Y (m)	X (m)	Y (m)					
1	지적도근점	3550	566087.44	174618.90	465781.45	174548.43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2	지적도근점	3551	565994.94	174791.67	465688.95	174721.20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3	지적도근점	3552	565925.70	174790.92	465619.72	174720.45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4	지적도근점	3553	565866.19	174782.25	465560.20	174711.78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5	지적도근점	3554	565808.78	174770.52	465502.79	174700.05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6	지적도근점	3555	565730.59	174746.88	465424.60	174676.41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7	지적도근점	3556	565707.29	174727.94	465401.30	174657.47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8	지적도근점	3557	565616.78	174699.35	465310.78	174628.88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9	지적도근점	3558	565581.27	174642.80	465275.28	174572.33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10	지적도근점	3559	565563.27	174597.17	465257.28	174526.70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11	지적도근점	3560	565532.69	174551.09	465226.70	174480.62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12	지적도근점	3561	565456.22	174514.78	465150.22	174444.31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13	지적도근점	3562	565442.51	174490.77	465136.52	174420.30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14	지적도근점	3563	565474.69	174436.43	465168.69	174365.96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15	지적도근점	3564	565508.22	174382.52	465202.22	174312.04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16	지적도근점	3565	565541.37	174387.77	465235.37	174317.30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17	지적도근점	3566	565601.30	174416.43	465295.31	174345.96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18	지적도근점	3567	565681.09	174464.37	465375.10	174393.90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19	지적도근점	3568	565723.24	174466.04	465417.25	174395.57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20	지적도근점	3569	565788.05	174479.53	465482.06	174409.05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21	지적도근점	3570	565751.13	174550.92	465445.14	174480.45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22	지적도근점	3571	565660.34	174584.02	465354.35	174513.55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23	지적도근점	3572	565629.38	174573.48	465323.39	174503.01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24	지적도근점	3573	565588.97	174544.96	465282.97	174474.49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25	지적도근점	3574	565544.70	174525.72	465238.70	174455.25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26	지적도근점	3575	565516.48	174523.30	465210.49	174452.83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27	지적도근점	3576	565538.46	174425.55	465232.47	174355.08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28	지적도근점	3577	565645.81	174456.11	465339.82	174385.64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29	지적도근점	3578	565783.30	174577.55	465477.31	174507.08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30	지적도근점	3579	565751.14	174626.61	465445.14	174556.14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31	지적도근점	3580	565787.70	174644.55	465481.70	174574.08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32	지적도근점	3581	565837.59	174606.99	465531.60	174536.52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33	지적도근점	3582	565858.41	174580.70	465552.42	174510.23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34	지적도근점	3583	565921.68	174753.94	465615.69	174683.46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35	지적도근점	3584	565870.54	174728.93	465564.55	174658.46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36	지적도근점	3585	565774.59	174739.46	465468.60	174668.99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37	지적도근점	3586	565716.72	174680.86	465410.73	174610.39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38	지적도근점	3587	565859.78	174693.40	465553.79	174622.93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39	지적도근점	3588	565975.00	174509.20	465669.01	174438.72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40	지적도근점	3589	566038.33	174503.96	465732.34	174433.48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설치
41	지적도근점	1418	564943.16	174971.06	464637.23	174900.54	2023. 2. 7.	철재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폐기

고양시 공고 제2023 - 257호

고양 GB해제취락(49개소)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시설 : 공원 폐지) 공람 공고

1. 고양 47개 GB해제취락 내 실효된 공원부지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고양시 공고 제2022-3076호 공람공고내용 변경)
2. 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2월 7일
고 양 시 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공원부지 변경)

－ 소규모취락 (공원 : 21개소)

구 분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비고
폐지	응달촌, 빈정동, 사리현, 월현, 늘봄마을, 용복원, 한오동1, 한오동2, 안터, 새원, 큰골1, 큰골2, 영심동, 박제궁, 수역이, 장터마을, 덩불말, 윗말, 유골, 중고개, 절골 (창릉공공주택지구 편입 공원 제외 : 건너말)	○ 공원시설폐지(21개소) － 어린이공원(16개소) 면적 : 24,927㎡ － 소공원(5개소) 면적 : 6,055㎡	공원 실효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도시기반시설 (공원) 폐지	

－ 중규모취락 (공원 : 49개소)

구 분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비고
폐지	서재동, 발말1, 발말2, 신평1, 신평2, 오거리, 제청말1, 제청말2, 효자골1, 효자골2, 청대골섬말1, 청대골섬말2, 두포동, 백신, 배라산, 난점1, 난점2, 양지말1, 양지말2, 가무네1, 가무네2, 삼성당1, 삼성당2, 상중대장1, 상중대장2, 대덕1, 대덕2, 소애촌서원촌1, 소애촌서원촌2, 소애촌서원촌3, 소애촌서원촌4, 뽕지골, 매화정, 위아래독곳이1, 위아래독곳이2, 갈머리1, 갈머리2, 안골뒤꾸지1, 안골뒤꾸지2, 안골뒤꾸지3, 새마을성동1, 새마을성동2, 새마을성동3, 맨돌1, 맨돌2, 웃말아랫말1, 웃말아랫말2, 웃말아랫말3, 웃말아랫말4 (창릉공공주택지구 편입 공원 제외 : 셋말)	○ 공원시설폐지(49개소) － 어린이공원(37개소) 면적 : 79,060㎡ － 소공원(11개소) 면적 : 12,911㎡ － 역사공원(1개소) 면적 : 1,986㎡	공원 실효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도시기반시설 (공원) 폐지	

－ 대규모취락 (공원 : 12개소)

구 분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비고
폐지	삼송1, 삼송2, 삼송4, 삼송5, 삼송6, 삼송7, 동산4, 동산5, 화전2, 화전3, 화전4, 화전5 (창릉공공주택지구 편입 공원 제외 : 화전8, 화전9)	○ 공원시설폐지(12개소) － 어린이공원(9개소) 면적 : 21,116㎡ － 소공원(3개소) 면적 : 3,759㎡	공원 실효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도시기반시설 (공원) 폐지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공동개발 추가)

구 분	위 치	공동개발		변경 사유	비고
		기정	변경		
변경	소규모취락 중규모취락 대규모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통사항)	○ 공동개발 － 60㎡미만의 과소토지로서 인접한 토지가 동일소유자인 경우에 규제제어 － 건축물대장상 공유토지로서 등재된 토지인 경우에 권장제어	○ 공동개발 － 60㎡미만의 과소토지로서 인접한 토지가 동일소유자인 경우에 규제제어 － 건축물대장상 공유토지로서 등재된 토지인 경우에 권장제어 － 공공기여대상부지내 전체 필지(국·공유지 제외)	공공기여대상부지의 일체적 정비를 위한 공동개발 추가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공동주택 불허)

구 분	용도지역	허용용도		변경 사유	비고
		기정	변경		
변경	제1종전용주거지역	-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다목 다가구주택은 6가구 이하 - 별표1 제2호 나목 다세대주택(6세대 이하), 다목 연립주택(동당 6세대 이하) <그외 생략>	-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다목 다가구주택은 6가구 이하(단, 공공기여대상부지 내에서는 다가구주택은 3가구 이하) - 별표1 제2호 나목 다세대주택(6세대 이하), 다목 연립주택(동당 6세대 이하)(단, 공공기여대상부지 내에서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제외) <그외 생략>	공원폐지 토지내 세대수 증가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불허, 다가구주택은 3가구 이하 허용	
변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다목 다가구주택은 6가구 이하 - 별표1 제2호 나목 다세대주택(6세대 이하), 다목 연립주택(동당 6세대 이하) <그외 생략>	-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다목 다가구주택은 6가구 이하(단, 공공기여대상부지 내에서는 다가구주택은 3가구 이하) - 별표1 제2호 나목 다세대주택(6세대 이하), 다목 연립주택(동당 6세대 이하)(단, 공공기여대상부지 내에서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제외) <그외 생략>	공원폐지 토지내 세대수 증가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불허, 다가구주택은 3가구 이하 허용	

■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전면공지, 대지내조경, 차량진출입불허구간, 경관, 친환경 계획 등에 관한 사항(변경) : 신설(공공기여)

구 분	위치	구분	변경내용	비고
신설	소규모취락 중규모취락 대규모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통사항)	공공기여	- 정의 : ‘공공기여대상부지’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실효되어 폐지된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존치하면서 공공기여 방안을 수립한 지역 - 공공기여대상부지내 필지(국·공유지 제외)는 전체 공동개발(권장)을 원칙으로 하여 부지면적의 15%에 상당하는 공공공지를 조성하여 제공 -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필지의 공동개발(권장)이 어려운 경우, 다음 각호 하나 이상의 방식을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결정. 단, 공공기여대상부지내 맹지가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함 - 개별필지 공공공지 조성 후 제공 -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개설도로 부지 제공 - 비용 납부 - 공공공지는 고양시 유지관리부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면이 1/4 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지상에 설치 - 1개소를 설치하되, 면적은 최소 45㎡이상 - 최소폭은 5m 이상 -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 공공기여대상부지내 국·공유지 제외한 전체 필지를 공동개발한 경우에는 공동개발에 따른 인센티브(용적률 완화)를 부여	

②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 내용(변경) : 변경(공동개발 인센티브)

구분	구 분	완화항목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고
기정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사항	공동개발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
변경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사항	공동개발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단, 공공기여대상부지는 전체 필지(국·공유지 제외)의 공동개발에 한하여 적용

□ 기타사항

가. 공람 및 의견제출기간 : 시보, 홈페이지 게재일로 부터14일간

나.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031-8075-3083)

다. 관련도서 :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향후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